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2호 2023. 3. 28.(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65호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66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남해군 조례 제2667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668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0
남해군 조례 제2669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17
남해군 조례 제2670호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67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7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7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23호 개발골천 소하천 지정 변경 및 정비종합계획 변경, 소하천구역 변경 고시 ..	35
남해군 고시 제2023-33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40
남해군 고시 제2023-3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46
남해군 고시 제2023-35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5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344호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52
남해군 공고 제2023-349호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	55
남해군 공고 제2023-371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3-374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	65
남해군 공고 제2023-38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골곡도로 개량사업) ..	76
남해군 공고 제2023-39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65호

남해군 주민영양관리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영양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5. “섭취장애”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6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확대 사업”을 “직불제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나잠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체별 지원 내용 (제12조 관련)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군내 지역 농·축협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농축산과
(사)농촌지도자 남해군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사)여성농업인 남해군연합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농축산과
남해군 4-H연합회	영농 및 학교4-H회 시범사업 및 과제 활동, 중앙(도) 연찬 참가	농축산과
남해군강소농회	강소농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시범사업	농축산과
(사)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남해 낙우회	축산,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낙농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 참가	농축산과
양봉협회 남해군지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양봉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행사 참가	농축산과
남해군 특산물 생산 유통협의회	직거래장터운영지원, 국내외 선진 유통 홍보 판매 기술 벤치마킹	유통지원과
(사)한국생활개선 남해군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및 분야별 전문연구회	유통지원과
보물섬 국화연구회	국화 전시회, 작품 생산 및 선진지 견학, 재배기술 교육	유통지원과
체험마을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체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동	유통지원과
농촌체험·휴양 마을회	농촌체험 기반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마을 운영 교육	유통지원과
남해군정보화 농업인회	농업 e-비즈니스 정보화	유통지원과
남해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농업기술과
(사)한국쌀전업농 남해군 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고품질 벼 재배, 기술 선도 실천 및 해외 벼 재배동향, 가공품 개발 벤치마킹	농업기술과
보물섬 남해시금치 연합회	시금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남해군 참다래연합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남해파프리카 수출농단	남해파프리카 수출 관련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보물섬미니단호박 작목회	미니단호박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사)한국참다래연합회 남해지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농업기술과
보물섬남해마늘 작목회	회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선진마늘재배 기술 벤치마킹 국·내외 연수, 시범사업 마늘축제 참여 및 홍보	농업기술과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해양발전과
수산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	해외연수 및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치어방류 및 해안정화활동 등	해양발전과
남해군낙시연합회	전국 낙시대회	해양발전과
남해군어촌계장 연합회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수산자원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수산자원과
나잠어업 종사자 단체	나잠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 등	수산자원과

남해군 조례 제2667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수” 를 “남해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5조” 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시행령 제5조” 를 “영 제5조”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납입고지서” 를 “납세고지서” 로, “「남해군세 부과징수규칙」” 을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68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남해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2. 차장 : 부군수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 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다만, 해당 국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해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이 경우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 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

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장·소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소장(해당 국장·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별표 5]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남해군 조례 제2669호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0호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남해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 행사 및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주관자인 옥외행사
-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 3.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옥외행사 개요(일시·장소·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임,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 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 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 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1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7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발령한다.

2023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음성의 녹음
 -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5.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 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 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하여야 한다.
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등 지정)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팀장
-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정보를 운영·관리할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출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출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 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

- 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 ③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사용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23호

깨밭골천 소하천 지정 변경 및 정비종합계획 변경,
소하천구역 변경 고시

2023년 3월 16일

남 해 군 수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남해	깨밭골천	삼동면 동천리 119	삼동읍 동천리 68	1.07	변경 (중점부 조정)

열람서류 :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정비 기간	2022년 05월 ~ 2022년 09월		
대상 소하천	총 1개소(개밭골천)		
총사업비	19,800천원	총길이	1.07 km
목적 및 정비 효과	재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한 하폭유지 · 제방고 부족구간의 월류방지 · 농경지 내수침수 방지대책 수립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호안공법 채택으로 주변 환경개선 · 기존 노후 시설물 개량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 · 제방폭 유지로 인한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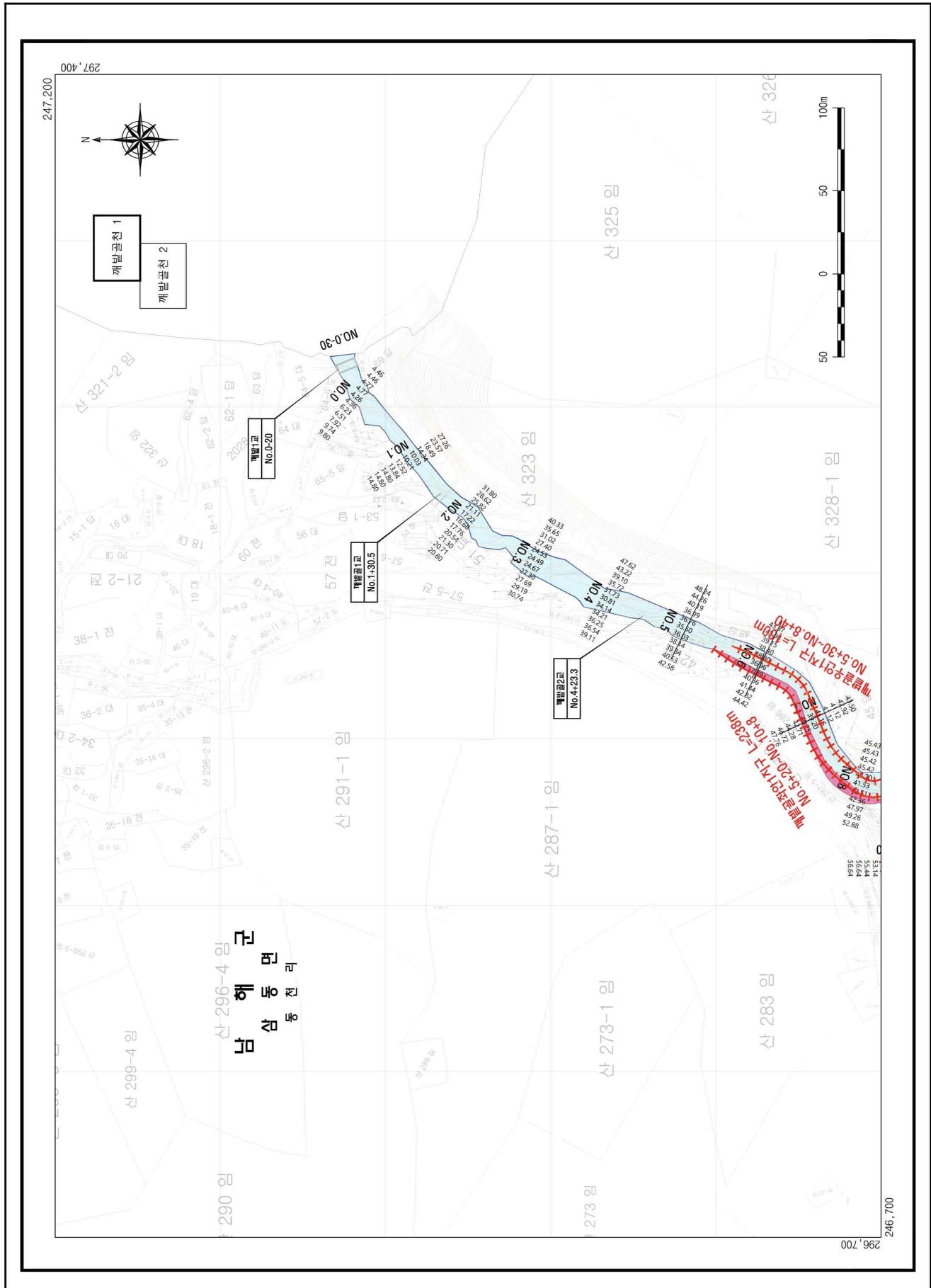
- 열람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남 해	개밭골천	삼동면 동천리 43등 33필지	12,05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개발골천 소하천구역 조서

구역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토지소유자 정보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주소	성명
좌안	남해	삼동	동천	43	답	833	290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00	이0태
좌안	남해	삼동	동천	2031	구	17,653	8,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안	남해	삼동	동천	51	답	727	1	서울 양천구 목동 00	김0길
좌안	남해	삼동	동천	산281	임	198	23		이0천
좌안	남해	삼동	동천	산280	임	595	1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00	이0홍
좌안	남해	삼동	동천	44	답	89	89		조0호
좌안	남해	삼동	동천	산287-6	도	778	1		국 (국토교통부)
좌안	남해	삼동	동천	산285	임	992	57		김0호
좌안	남해	삼동	동천	89	답	985	43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00	조0호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14	답	202	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00	이0훈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20-2	답	1,109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00길 00	이0선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03	답	168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조0수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04-1	답	1,931	44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조0수
좌안	남해	삼동	동천	93	답	803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00	주0자
좌안	남해	삼동	동천	91	답	109	9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00	김0분
좌안	남해	삼동	동천	96	답	2,113	91		강0경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19	답	635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00번길00	김0경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12	답	714	19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00	강0희
좌안	남해	삼동	동천	92	답	479	17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00	김0분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22	답	965	207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00	하0류
좌안	남해	삼동	동천	113	답	1,660	15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00	강0길
좌안	남해	삼동	동천	90	답	169	168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양화금로00	이0홍
좌안	남해	삼동	동천		가	-	255		
우안	남해	삼동	동천	68	천	102	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0길 00	장0철
우안	남해	삼동	동천	81	답	873	10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0길00	김0화
우안	남해	삼동	동천	86-2	답	1,296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우안	남해	삼동	동천	산337	임	15,570	15	서울 성동구 도선동 00	이0준
우안	남해	삼동	동천	86-1	답	99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00번길 00	하0류
우안	남해	삼동	동천	79-1	답	1,732	10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00	김0중
우안	남해	삼동	동천	323	임	16,860	78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00	이0근



남해군 고시 제2023-33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9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료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0399	도근점	중부	24921.599	281105.362	34°50'13.8636"	127°53'12.0913"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426-2	철재	남해군청	
2	10400	도근점	중부	249435.391	281089.664	34°50'15.3156"	127°53'11.4784"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426-2	맨홀	남해군청	
3	10401	도근점	중부	249474.055	281058.946	34°50'16.5789"	127°53'10.2830"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1436	철재	남해군청	
4	10402	도근점	중부	249487.08	281079.156	34°50'16.9957"	127°53'11.0828"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323	맨홀	남해군청	
5	10403	도근점	중부	249504.55	281033.418	34°50'17.5757"	127°53'9.2889"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1436	철재	남해군청	
6	10404	도근점	중부	249544.882	281077.635	34°50'18.8717"	127°53'11.0430"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969-3	맨홀	남해군청	
7	10405	도근점	중부	249527.667	281112.3	34°50'18.3031"	127°53'12.4013"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969-3	철재	남해군청	
8	10406	도근점	중부	249492.622	281147.858	34°50'17.5758"	127°53'13.7884"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426-2	맨홀	남해군청	
9	10407	도근점	중부	249467.381	281118.473	34°50'16.3453"	127°53'12.6232"	20221017	남해읍 아산리 428	철재	남해군청	
10	10408	도근점	중부	247659.981	281467.647	34°49'17.6006"	127°53'25.7329"	20221019	남해읍 평리 837	철재	남해군청	
11	10409	도근점	중부	247634.509	281500.184	34°49'16.7647"	127°53'27.0043"	20221014	남해읍 평리 837	철재	남해군청	
12	10410	도근점	중부	247556.521	281488.404	34°49'14.2376"	127°53'26.5135"	20221019	남해읍 평리 1416-2	철재	남해군청	
13	10411	도근점	중부	247559.483	281520.659	34°49'14.3244"	127°53'27.7836"	20221019	남해읍 평리 1594-5	철재	남해군청	
14	10412	도근점	중부	247508.8	281467.323	34°49'12.695"	127°53'25.6674"	20221019	남해읍 평리 1623-2	철재	남해군청	
15	10413	도근점	중부	247480.884	281430.357	34°49'11.8002"	127°53'24.2033"	20221019	남해읍 평리 1623-2	철재	남해군청	
16	10414	도근점	중부	247476.139	281443.187	34°49'11.6425"	127°53'24.7064"	20221019	남해읍 평리 1491	기타	남해군청	
17	10415	도근점	중부	247465.563	281453.877	34°49'11.2963"	127°53'25.1233"	20221019	남해읍 평리 1491	기타	남해군청	
18	10416	도근점	중부	247456.761	281481.585	34°49'11.0027"	127°53'26.2104"	20221019	남해읍 평리 1623-2	맨홀	남해군청	
19	10417	도근점	중부	247426.743	281474.202	34°49'10.0309"	127°53'25.9094"	20221019	남해읍 평리 1514-2	기타	남해군청	
20	10418	도근점	중부	247415.358	281547.784	34°49'9.6402"	127°53'28.8005"	20221019	남해읍 평리 1623-2	철재	남해군청	
21	10419	도근점	중부	247381.428	281529.108	34°49'8.5447"	127°53'28.0539"	20221019	남해읍 평리 1519-2	맨홀	남해군청	
22	10420	도근점	중부	247409.092	281569.11	34°49'9.4308"	127°53'29.6374"	20221019	남해읍 평리 657-1	철재	남해군청	
23	10421	도근점	중부	247461.601	281571.918	34°49'11.1337"	127°53'29.7662"	20221019	남해읍 평리 1483-1	기타	남해군청	
24	10422	도근점	중부	247385.748	281594.52	34°49'8.6660"	127°53'30.6290"	20221019	남해읍 평리 656	기타	남해군청	
25	10423	도근점	중부	247409.208	281636.405	34°49'9.4151"	127°53'32.2851"	20221019	남해읍 평리 683-2	철재	남해군청	
26	10424	도근점	중부	247374.672	281647.049	34°49'8.2915"	127°53'32.6918"	20221019	남해읍 평리 684-3	철재	남해군청	
27	10425	도근점	중부	247343.703	281675.418	34°49'7.2784"	127°53'33.7971"	20221019	남해읍 평리 709-5	철재	남해군청	
28	10426	도근점	중부	247314.751	281627.027	34°49'6.3530"	127°53'31.8831"	20221019	남해읍 평리 649	철재	남해군청	
29	10427	도근점	중부	247277.056	281580.256	34°49'5.1434"	127°53'30.0297"	20221019	남해읍 평리 636-1	철재	남해군청	
30	10428	도근점	중부	247464.69	281627.774	34°49'11.2165"	127°53'31.9649"	20221019	남해읍 평리 663-2	맨홀	남해군청	
31	10429	도근점	중부	247510.799	281613.645	34°49'12.7180"	127°53'31.4251"	20221019	남해읍 평리 816-3	철재	남해군청	
32	10430	도근점	중부	247537.795	281597.59	34°49'13.5985"	127°53'30.8029"	20221019	남해읍 평리 1617	철재	남해군청	
33	10431	도근점	중부	247541.951	281566.635	34°49'13.7424"	127°53'29.5864"	20221019	남해읍 평리 1479	철재	남해군청	
34	10432	도근점	중부	247604.839	281563.178	34°49'15.7838"	127°53'29.4724"	20221019	남해읍 평리 837	철재	남해군청	
35	10433	도근점	중부	247586.812	281598.731	34°49'15.1887"	127°53'30.8650"	20221019	남해읍 평리 809-2	철재	남해군청	
36	10434	도근점	중부	247616.198	281723.127	34°49'16.1063"	127°53'35.7696"	20221019	남해읍 평리 822-1	철재	남해군청	
37	10435	도근점	중부	247590.459	281777.246	34°49'15.2555"	127°53'37.8899"	20221019	남해읍 평리 822-1	맨홀	남해군청	
38	10436	도근점	중부	247579.519	281714.044	34°49'14.9188"	127°53'35.3994"	20221019	남해읍 평리 806-7	맨홀	남해군청	
39	10437	도근점	중부	247547.755	281652.119	34°49'13.9060"	127°53'32.9519"	20221019	남해읍 평리 812-1	철재	남해군청	
40	10438	도근점	중부	247540.605	281699.703	34°49'13.6603"	127°53'34.8215"	20221019	남해읍 평리 814-3	철재	남해군청	
41	10439	도근점	중부	247503.463	281682.716	34°49'12.4600"	127°53'34.1402"	20221019	남해읍 평리 815	기타	남해군청	
42	10440	도근점	중부	247489.147	281649.744	34°49'12.0050"	127°53'32.8379"	20221019	남해읍 평리 664-1	철재	남해군청	
43	10441	도근점	중부	247492.187	281687.651	34°49'12.0928"	127°53'34.3304"	20221019	남해읍 평리 680	철재	남해군청	

지역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44	10442	도근점	중부	247491.928	281725.482	34° 49' 12.0734"	127° 53' 35.8188"	20221019	남해읍 평리 668	철재	남해군정	
45	10443	도근점	중부	247530.442	281746.863	34° 49' 13.3169"	127° 53' 36.6735"	20221019	남해읍 평리 803-2	철재	남해군정	
46	10444	도근점	중부	247467.258	281729.958	34° 49' 11.2717"	127° 53' 35.9862"	20221019	남해읍 평리 1594-15	철재	남해군정	
47	10445	도근점	중부	247441.419	281700.292	34° 49' 10.4441"	127° 53' 34.8100"	20221019	남해읍 평리 675	기타	남해군정	
48	10446	도근점	중부	247428.063	281740.621	34° 49' 9.9968"	127° 53' 36.3920"	20221019	남해읍 평리 1594-15	철재	남해군정	
49	10447	도근점	중부	247417.6	281701.298	34° 49' 9.6687"	127° 53' 34.8412"	20221019	남해읍 평리 692-1	철재	남해군정	
50	10448	도근점	중부	247391.434	281694.8	34° 49' 8.8216"	127° 53' 34.5764"	20221019	남해읍 평리 1617	철재	남해군정	
51	10449	도근점	중부	247458.248	281786.818	34° 49' 10.9629"	127° 53' 38.2202"	20221019	남해읍 평리 763-1	철재	남해군정	
52	10450	도근점	중부	247427.837	281767.09	34° 49' 9.9818"	127° 53' 37.4333"	20221019	남해읍 평리 1604	맨홀	남해군정	
53	10451	도근점	중부	247410.631	281777.935	34° 49' 9.4204"	127° 53' 37.8540"	20221019	남해읍 평리 1604	철재	남해군정	
54	10452	도근점	중부	247400.366	281818.027	34° 49' 9.0758"	127° 53' 39.4278"	20221019	남해읍 평리 749	철재	남해군정	
55	10453	도근점	중부	247386.897	281756.021	34° 49' 8.6567"	127° 53' 36.9835"	20221019	남해읍 평리 1604	철재	남해군정	
56	10454	도근점	중부	247337.188	281765.457	34° 49' 7.0411"	127° 53' 37.3373"	20221019	남해읍 평리 733	기타	남해군정	
57	10455	도근점	중부	247347.199	281757.448	34° 49' 7.3682"	127° 53' 37.0257"	20221019	남해읍 평리 733	기타	남해군정	
58	10456	도근점	중부	247349.475	281744.537	34° 49' 7.4458"	127° 53' 36.5185"	20221019	남해읍 평리 1594-15	철재	남해군정	
59	10457	도근점	중부	247345.61	281709.193	34° 49' 11.2165"	127° 53' 31.9649"	20221019	남해읍 평리 1617	철재	남해군정	
60	10458	도근점	중부	247373.576	281719.402	34° 49' 8.2350"	127° 53' 35.5381"	20221104	남해읍 평리 711	기타	남해군정	
61	10459	도근점	중부	247555.104	281785.454	34° 49' 14.1060"	127° 53' 38.2005"	20221019	남해읍 평리 798-5	철재	남해군정	
62	10460	도근점	중부	247550.052	281864.612	34° 49' 13.9199"	127° 53' 41.3132"	20221019	남해읍 평리 793-3	철재	남해군정	
63	10461	도근점	중부	247519.469	281895.75	34° 49' 12.9178"	127° 53' 42.5267"	20221019	남해읍 평리 800-2	철재	남해군정	
64	10462	도근점	중부	247496.388	281814.75	34° 49' 12.1923"	127° 53' 39.3326"	20221019	남해읍 평리 768-1	철재	남해군정	
65	10463	도근점	중부	247481.922	281876.472	34° 49' 11.7051"	127° 53' 41.7559"	20221104	남해읍 평리 771-4	철재	남해군정	
66	10464	도근점	중부	247500.927	281951.334	34° 49' 12.3001"	127° 53' 44.7080"	20221219	남해읍 평리 376	철재	남해군정	
67	11388	도근점	중부	242560.602	287876.099	34° 46' 30.2264"	127° 57' 35.9552"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6	철재	남해군정	
68	11389	도근점	중부	242533.147	287853.407	34° 46' 29.3427"	127° 57' 35.052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7	철재	남해군정	
69	11390	도근점	중부	242554.351	287809.781	34° 46' 30.0442"	127° 57' 33.3345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7-1	철재	남해군정	
70	11391	도근점	중부	242529.354	287824.487	34° 46' 29.2285"	127° 57' 33.914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1	11392	도근점	중부	242494.239	287734.671	34° 46' 28.1173"	127° 57' 30.3297"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1	철재	남해군정	
72	11393	도근점	중부	242499.208	287774.617	34° 46' 28.2659"	127° 57' 31.941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3	11394	도근점	중부	242483.481	287787.738	34° 46' 27.7515"	127° 57' 32.451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4	11395	도근점	중부	242482.347	287750.903	34° 46' 27.261"	127° 57' 31.0028"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8-2	철재	남해군정	
75	11396	도근점	중부	242468.137	287771.984	34° 46' 27.2586"	127° 57' 31.826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6	11397	도근점	중부	242451.489	287783.914	34° 46' 26.7147"	127° 57' 32.289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7	11398	도근점	중부	242436.990	287785.903	34° 46' 26.2436"	127° 57' 32.362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78	11399	도근점	중부	242446.524	287760.307	34° 46' 26.5609"	127° 57' 31.359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기타	남해군정	
79	11400	도근점	중부	242447.471	287744.145	34° 46' 26.5966"	127° 57' 30.723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08-5	철재	남해군정	
80	11401	도근점	중부	242457.068	287735.102	34° 46' 26.9108"	127° 57' 30.372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06-6	철재	남해군정	
81	11402	도근점	중부	242482.081	287697.861	34° 46' 27.7339"	127° 57' 28.917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	철재	남해군정	
82	11403	도근점	중부	242453.122	287671.453	34° 46' 26.8025"	127° 57' 27.8677"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	철재	남해군정	
83	11404	도근점	중부	242435.415	287670.687	34° 46' 26.2282"	127° 57' 27.830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02	철재	남해군정	
84	11405	도근점	중부	242419.552	287687.660	34° 46' 25.7082"	127° 57' 28.492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85	11406	도근점	중부	242412.957	287710.548	34° 46' 25.4872"	127° 57' 29.389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정	
86	11407	도근점	중부	242424.573	287728.929	34° 46' 25.8584"	127° 57' 30.117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05-5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료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87	11408	도근점	중부	242402.525	287729.057	34°46'25.1430"	127°57'30.1138"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18	기타	남해군청	
88	11409	도근점	중부	242406.876	287740.549	34°46'25.2806"	127°57'30.567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18	기타	남해군청	
89	11410	도근점	중부	242411.210	287676.085	34°46'25.4412"	127°57'28.034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청	
90	11411	도근점	중부	242391.402	287680.148	34°46'24.7972"	127°57'28.1865"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9	철재	남해군청	
91	11412	도근점	중부	242379.887	287667.147	34°46'24.4276"	127°57'27.670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26	철재	남해군청	
92	11413	도근점	중부	242351.774	287642.091	34°46'23.5232"	127°57'26.675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28	철재	남해군청	
93	11414	도근점	중부	242349.809	287601.661	34°46'23.4719"	127°57'25.084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29-6	철재	남해군청	
94	11415	도근점	중부	242333.416	287603.636	34°46'22.9394"	127°57'25.156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29-6	철재	남해군청	
95	11416	도근점	중부	242303.735	287580.979	34°46'21.9834"	127°57'24.2541"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31	철재	남해군청	
96	11417	도근점	중부	242334.031	287544.810	34°46'22.9775"	127°57'22.8432"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71-7	철재	남해군청	
97	11418	도근점	중부	242418.630	287603.756	34°46'22.7043"	127°57'25.1927"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	철재	남해군청	
98	11419	도근점	중부	242433.864	287627.952	34°46'26.1911"	127°57'26.149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	철재	남해군청	
99	11420	도근점	중부	242323.563	287500.970	34°46'22.6514"	127°57'21.115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74-2	철재	남해군청	
100	11421	도근점	중부	242315.934	287466.833	34°46'22.4144"	127°57'19.770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57-2	철재	남해군청	
101	11422	도근점	중부	242346.857	287459.270	34°46'26.1911"	127°57'19.484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52	철재	남해군청	
102	11423	도근점	중부	242480.036	287337.652	34°46'27.7788"	127°57'14.751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05-23	철재	남해군청	
103	11424	도근점	중부	242395.545	287371.908	34°46'25.0268"	127°57'16.067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55-12	철재	남해군청	
104	11425	도근점	중부	242338.572	287378.880	34°46'23.1761"	127°57'16.3202"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55-12	철재	남해군청	
105	11426	도근점	중부	242296.520	287380.910	34°46'21.8110"	127°57'16.384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55-12	철재	남해군청	
106	11427	도근점	중부	242273.363	287375.330	34°46'21.0614"	127°57'16.156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17	철재	남해군청	
107	11428	도근점	중부	242222.299	287342.796	34°46'19.4146"	127°57'14.857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17	철재	남해군청	
108	11429	도근점	중부	242168.754	287314.279	34°46'17.6860"	127°57'13.716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17	철재	남해군청	
109	11430	도근점	중부	242143.283	287288.921	34°46'16.8674"	127°57'12.710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17	철재	남해군청	
110	11431	도근점	중부	242107.983	287263.816	34°46'15.7297"	127°57'11.7097"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17	철재	남해군청	
111	11432	도근점	중부	242084.635	287288.620	34°46'14.9645"	127°57'12.676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63	철재	남해군청	
112	11433	도근점	중부	242079.317	287342.080	34°46'14.7755"	127°57'14.776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63	철재	남해군청	
113	11434	도근점	중부	242121.686	287345.363	34°46'16.1492"	127°57'14.9213"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0-5	철재	남해군청	
114	11435	도근점	중부	242107.428	287404.570	34°46'15.6684"	127°57'17.244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86	철재	남해군청	
115	11436	도근점	중부	242072.174	287425.443	34°46'14.5180"	127°57'18.051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85-8	철재	남해군청	
116	11437	도근점	중부	242177.692	287431.129	34°46'17.9400"	127°57'18.3146"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1558	철재	남해군청	
117	11438	도근점	중부	242202.150	287412.951	34°46'18.7392"	127°57'17.6090"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2	철재	남해군청	
118	11439	도근점	중부	242163.815	287371.644	34°46'17.5081"	127°57'15.9704"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1	철재	남해군청	
119	11440	도근점	중부	242175.288	287349.193	34°46'17.8872"	127°57'15.0919"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3	철재	남해군청	
120	11441	도근점	중부	242198.699	287358.583	34°46'18.6440"	127°57'15.4698"	20221020	이동면 신전리 998-3	기타	남해군청	
121	11442	도근점	중부	242974.487	287853.937	34°46'43.6624"	127°57'35.2392"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1549	철재	남해군청	
122	11443	도근점	중부	242999.318	287887.030	34°46'44.4578"	127°57'36.5500"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1549	철재	남해군청	
123	11444	도근점	중부	242995.819	287911.046	34°46'44.3368"	127°57'37.4931"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44-7	기타	남해군청	
124	11445	도근점	중부	243030.776	287941.980	34°46'45.4615"	127°57'38.7227"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1549	플라스틱	남해군청	
125	11446	도근점	중부	242990.975	287954.110	34°46'44.1663"	127°57'39.1847"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산79-3	철재	남해군청	
126	11447	도근점	중부	242959.996	287955.819	34°46'43.1606"	127°57'39.2403"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산79-3	철재	남해군청	
127	11448	도근점	중부	242945.019	287938.143	34°46'42.6801"	127°57'38.5395"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42-1	철재	남해군청	
128	11449	도근점	중부	242934.083	287963.117	34°46'42.3176"	127°57'39.5175"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1553	기타	남해군청	
129	11450	도근점	중부	242909.586	287950.494	34°46'41.5266"	127°57'39.0119"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6	철재	남해군청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료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30	11451	도근점	중부	242914.004	287984.928	34°46'41.6593"	127°57'40.3676"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9-1	철재	남해군청	
131	11452	도근점	중부	242898.331	287925.403	34°46'41.1692"	127°57'38.0210"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1-2	철재	남해군청	
132	11453	도근점	중부	242883.975	287959.489	22.314	34°46'40.6929"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4	기타	남해군청	
133	11454	도근점	중부	242872.919	287939.879	16.307	34°46'40.3402"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1-2	철재	남해군청	
134	11455	도근점	중부	242940.733	287913.863	20.912	34°46'42.5487"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0-2	기타	남해군청	
135	11456	도근점	중부	242949.613	287905.932	20.890	34°46'42.8392"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0-2	기타	남해군청	
136	11457	도근점	중부	242938.890	287888.998	16.556	34°46'42.4965"	20221130	이동면 신전리 331-2	철재	남해군청	
137	16471	도근점	중부	250664.177	274973.052	60.895	34°50'56.8745"	20221011	서면 남상리 1069	기타	남해군청	
138	16472	도근점	중부	250595.484	275097.025	80.635	34°50'54.6127"	20221011	서면 남상리 281	철재	남해군청	
139	16473	도근점	중부	250561.609	275143.700	89.202	34°50'53.5012"	20221011	서면 남상리 271	철재	남해군청	
140	16474	도근점	중부	250499.112	275156.003	92.264	34°50'51.4700"	20221011	서면 남상리 249	철재	남해군청	
141	16475	도근점	중부	250454.033	275186.538	93.841	34°50'49.9992"	20221011	서면 남상리 229-1	철재	남해군청	
142	16476	도근점	중부	250408.764	275177.121	96.042	34°50'48.5329"	20221011	서면 남상리 219-2	철재	남해군청	
143	16477	도근점	중부	250433.943	275256.393	105.722	34°50'49.3288"	20221011	서면 남상리 1805	철재	남해군청	
144	16478	도근점	중부	250427.317	275135.476	87.770	34°50'49.1460"	20221011	서면 남상리 234	철재	남해군청	
145	16479	도근점	중부	250441.526	275118.361	85.118	34°50'49.6116"	20221011	서면 남상리 1805	철재	남해군청	
146	16480	도근점	중부	250439.764	275093.503	81.804	34°50'49.5610"	20221011	서면 남상리 235	철재	남해군청	
147	16481	도근점	중부	250417.807	275103.091	88.196	34°50'48.8460"	20221011	서면 남상리 206	철재	남해군청	
148	16482	도근점	중부	250404.673	275111.071	89.450	34°50'48.4177"	20221011	서면 남상리 1805	철재	남해군청	
149	16483	도근점	중부	250425.538	275072.154	79.719	34°50'49.1051"	20221011	서면 남상리 1810-6	철재	남해군청	
150	16484	도근점	중부	250440.744	275060.441	82.518	34°50'49.6016"	20221011	서면 남상리 1108	철재	남해군청	
151	16485	도근점	중부	250453.850	275050.260	78.404	34°50'50.0295"	20221011	서면 남상리 1109-1	철재	남해군청	
152	16486	도근점	중부	250489.698	275063.304	82.635	34°50'51.1892"	20221011	서면 남상리 1100	기타	남해군청	
153	16487	도근점	중부	250498.238	275067.642	79.902	34°50'51.4652"	20221011	서면 남상리 1099-1	철재	남해군청	
154	16488	도근점	중부	250486.198	275089.035	82.246	34°50'51.0688"	20221116	서면 남상리 1808-4	철재	남해군청	
155	16489	도근점	중부	250502.649	275107.558	87.999	34°50'51.5977"	20221116	서면 남상리 246	기타	남해군청	
156	16490	도근점	중부	250515.176	275106.098	87.996	34°50'52.0046"	20221116	서면 남상리 245	기타	남해군청	
157	16491	도근점	중부	250517.340	275125.922	87.309	34°50'52.0695"	20221011	서면 남상리 1808-9	철재	남해군청	
158	16492	도근점	중부	250530.520	275076.232	82.043	34°50'52.5103"	20221011	서면 남상리 1097	기타	남해군청	
159	16493	도근점	중부	250526.438	275041.341	78.646	34°50'52.3872"	20221011	서면 남상리 1095	기타	남해군청	
160	16494	도근점	중부	250515.064	275023.300	78.147	34°50'52.0229"	20221011	서면 남상리 1117	기타	남해군청	
161	16495	도근점	중부	250539.768	275023.174	74.234	34°50'52.8245"	20221011	서면 남상리 1140-2	철재	남해군청	
162	16496	도근점	중부	250573.057	275014.211	71.838	34°50'53.9070"	20221011	서면 남상리 1087-2	철재	남해군청	
163	16497	도근점	중부	250594.358	274972.979	67.335	34°50'54.6091"	20221011	서면 남상리 1065-3	철재	남해군청	
164	16498	도근점	중부	250591.158	274934.286	63.990	34°50'54.5156"	20221011	서면 남상리 1150-1	철재	남해군청	
165	16499	도근점	중부	250557.175	274941.209	65.751	34°50'53.4111"	20221012	서면 남상리 1148	기타	남해군청	
166	16500	도근점	중부	250532.810	274978.064	68.916	34°50'52.6107"	20221012	서면 남상리 1135-1	철재	남해군청	
167	16501	도근점	중부	250526.470	274997.724	72.219	34°50'52.3998"	20221012	서면 남상리 1120-1	철재	남해군청	
168	16502	도근점	중부	250483.999	274971.743	68.491	34°50'51.0286"	20221012	서면 남상리 1154-7	철재	남해군청	
169	16503	도근점	중부	250495.840	274963.762	70.150	34°50'51.4149"	20221116	서면 남상리 1154-4	기타	남해군청	
170	16504	도근점	중부	250484.514	275006.034	75.481	34°50'51.0362"	20221012	서면 남상리 1128	기타	남해군청	
171	16505	도근점	중부	250452.093	274985.902	71.583	34°50'49.9896"	20221012	서면 남상리 1164-3	철재	남해군청	
172	16506	도근점	중부	250440.615	274966.666	73.064	34°50'49.6223"	20221116	서면 남상리 1164-7	기타	남해군청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73	16507	도근점	중부	250389.799	275008.132	80.226	34°50'47.9624"	127°49'12.4549"	20221116	서면 남상리 1216-5	기타	남해군청	
174	16508	도근점	중부	250347.197	274945.494	70.332	34°50'46.5967"	127°49'9.9759"	20221116	서면 남상리 1810	철재	남해군청	
175	16509	도근점	중부	250452.013	274920.461	66.508	34°50'50.0044"	127°49'9.0243"	20221012	서면 남상리 1164-4	철재	남해군청	
176	16510	도근점	중부	250441.733	274816.854	56.432	34°50'49.6983"	127°49'4.9432"	20221012	서면 남상리 1166-21	철재	남해군청	
177	16511	도근점	중부	250498.744	274834.924	54.524	34°50'51.5433"	127°49'5.6727"	20221116	서면 남상리 1023-1	기타	남해군청	
178	16512	도근점	중부	250521.996	274804.515	48.025	34°50'52.3058"	127°49'4.4833"	20221012	서면 남상리 1021	철재	남해군청	
179	16513	도근점	중부	250497.411	274850.609	55.100	34°50'51.4959"	127°49'6.2896"	20221012	서면 남상리 1026-5	철재	남해군청	
180	16514	도근점	중부	250487.593	274863.748	57.039	34°50'51.1738"	127°49'6.8036"	20221012	서면 남상리 1028-2	철재	남해군청	
181	16515	도근점	중부	250529.287	274865.220	55.482	34°50'52.5263"	127°49'6.8749"	20221012	서면 남상리 1034-1	철재	남해군청	
182	16516	도근점	중부	250533.131	274875.372	55.829	34°50'52.6484"	127°49'7.2757"	20221012	서면 남상리 1031-5	철재	남해군청	
183	16517	도근점	중부	250554.256	274867.405	53.718	34°50'53.3359"	127°49'6.9689"	20221012	서면 남상리 1808-4	철재	남해군청	
184	16518	도근점	중부	250568.769	274891.594	57.151	34°50'53.8004"	127°49'7.9257"	20221012	서면 남상리 1041	기타	남해군청	
185	16519	도근점	중부	250611.878	274847.071	57.961	34°50'55.2110"	127°49'6.1871"	20221117	서면 남상리 1047-3	철재	남해군청	
186	16520	도근점	중부	250627.012	274883.689	55.967	34°50'55.6923"	127°49'7.6332"	20221012	서면 남상리 1808-4	철재	남해군청	
187	16521	도근점	중부	250643.513	274889.401	54.577	34°50'56.2262"	127°49'7.8634"	20221012	서면 남상리 1060-8	철재	남해군청	
188	16522	도근점	중부	250651.172	274869.407	54.611	34°50'56.4800"	127°49'7.0789"	20221012	서면 남상리 1048-6	철재	남해군청	
189	16523	도근점	중부	250648.469	274827.315	56.322	34°50'56.4035"	127°49'5.4213"	20221012	서면 남상리 1048-18	철재	남해군청	
190	16524	도근점	중부	250652.317	274791.775	52.451	34°50'56.5378"	127°49'4.0237"	20221012	서면 남상리 1048-3	철재	남해군청	
191	16525	도근점	중부	250660.591	274754.863	45.668	34°50'56.8160"	127°49'2.5735"	20221012	서면 남상리 1048-9	철재	남해군청	
192	16526	도근점	중부	250686.294	274724.514	36.450	34°50'57.6580"	127°49'1.3873"	20221117	서면 남상리 1048-18	철재	남해군청	
193	16527	도근점	중부	250775.101	274767.722	35.449	34°51'0.5282"	127°49'3.1164"	20221012	서면 남상리 912-5	철재	남해군청	
194	16528	도근점	중부	250769.139	274835.401	43.235	34°51'0.3168"	127°49'5.7783"	20221012	서면 남상리 914	철재	남해군청	
195	16529	도근점	중부	250776.858	274881.410	49.261	34°51'0.5550"	127°49'7.5917"	20221012	서면 남상리 837-12	철재	남해군청	
196	16530	도근점	중부	250720.196	274881.124	38.547	34°50'58.7166"	127°49'7.5622"	20221012	서면 남상리 906-1	철재	남해군청	
197	16531	도근점	중부	250713.832	274964.552	47.647	34°50'58.4880"	127°49'10.8439"	20221116	서면 남상리 1805	철재	남해군청	
198	16532	도근점	중부	250739.007	275000.829	52.614	34°50'59.2952"	127°49'12.2798"	20221116	서면 남상리 902-2	철재	남해군청	
199	16533	도근점	중부	250747.100	275076.362	59.359	34°50'59.5378"	127°49'15.2554"	20221116	서면 남상리 1807	철재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3-34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8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20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0465	도근점	중부	251019.925	26.840	34° 51' 6.5050"	127° 53' 42.5436"	20230131	남해읍 심천리 944	철재	남해군정	
2	10466	도근점	중부	251020.974	26.969	34° 51' 6.6519"	127° 53' 40.7995"	20230131	남해읍 심천리 792-5	철재	남해군정	
3	10467	도근점	중부	251030.507	31.269	34° 51' 6.8837"	127° 53' 37.7390"	20230131	남해읍 심천리 1300-1	철재	남해군정	
4	13436	도근점	중부	242319.835	81.337	34° 46' 20.50523"	128° 00' 55.19323"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802-2	철재	남해군정	
5	13437	도근점	중부	242319.809	84.447	34° 46' 20.80872"	128° 00' 53.71675"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산440-1	철재	남해군정	
6	13438	도근점	중부	242309.845	86.636	34° 46' 20.49082"	128° 00' 53.06512"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산436-5	철재	남해군정	
7	13439	도근점	중부	242314.509	95.116	34° 46' 20.66875"	128° 00' 49.87492"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781-10	철재	남해군정	
8	13440	도근점	중부	242296.794	99.016	34° 46' 20.10999"	128° 00' 47.94709"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781-24	철재	남해군정	
9	13441	도근점	중부	242275.730	118.484	34° 46' 19.49120"	128° 00' 40.16142"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780-6	철재	남해군정	
10	13442	도근점	중부	242223.318	108.334	34° 46' 17.76321"	128° 00' 43.44160"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산436-2	철재	남해군정	
11	13443	도근점	중부	242254.573	101.175	34° 46' 18.75139"	128° 00' 46.57050"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산436-3	철재	남해군정	
12	13444	도근점	중부	242211.499	96.725	34° 46' 17.33980"	128° 00' 48.23769"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790-3	철재	남해군정	
13	13445	도근점	중부	242192.679	90.475	34° 46' 16.71510"	128° 00' 49.91808"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848-2	철재	남해군정	
14	13446	도근점	중부	242185.254	86.055	34° 46' 16.44919"	128° 00' 52.91707"	20230209	삼동면 봉화리 1847-1	철재	남해군정	
15	13447	도근점	중부	242156.966	83.545	34° 46' 15.51406"	128° 00' 54.98061"	20230209	창선면 당항리 706-1	철재	남해군정	
16	19540	도근점	중부	255734.513	43.83	34° 53' 36.2644"	128° 00' 34.1264"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4	철재	남해군정	
17	19541	도근점	중부	255754.927	40.75	34° 53' 36.9279"	128° 00' 33.9951"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4	철재	남해군정	
18	19542	도근점	중부	255774.332	37.678	34° 53' 37.5585"	128° 00' 33.8856"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4	철재	남해군정	
19	19543	도근점	중부	255795.558	33.349	34° 53' 38.2484"	128° 00' 33.7555"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5	철재	남해군정	
20	19544	도근점	중부	255758.005	40.164	34° 53' 37.0370"	128° 00' 32.8894"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5	철재	남해군정	
21	19545	도근점	중부	255792.198	39.84	34° 53' 38.1590"	128° 00' 31.3932"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5	철재	남해군정	
22	19546	도근점	중부	255802.513	36.887	34° 53' 38.4884"	128° 00' 32.0249"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5	철재	남해군정	
23	19547	도근점	중부	255791.990	33.420	34° 53' 38.1192"	128° 00' 35.3683"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4	철재	남해군정	
24	19548	도근점	중부	255775.112	35.100	34° 53' 37.5679"	128° 00' 35.8080"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4	철재	남해군정	
25	19549	도근점	중부	255712.063	30.987	34° 53' 35.5037"	128° 00' 38.0097"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0-3	철재	남해군정	
26	19550	도근점	중부	255703.552	36.071	34° 53' 35.2354"	128° 00' 37.0606"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0-3	철재	남해군정	
27	19551	도근점	중부	255652.788	36.865	34° 53' 33.5759"	128° 00' 38.5427"	20221118	창선면 당항리 700-3	철재	남해군정	
28	13427	도근점	중부	244579.206	25.958	34° 47' 33.06516"	128° 02' 58.58838"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523-1	철재	남해군정	
29	13428	도근점	중부	244594.633	19.708	34° 47' 33.54853"	128° 03' 0.58786"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536-1	철재	남해군정	
30	13429	도근점	중부	244655.547	13.75	34° 47' 35.51293"	128° 03' 2.0001"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546-3	철재	남해군정	
31	13430	도근점	중부	244739.362	7.091	34° 47' 38.24413"	128° 03' 0.66679"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9-3	철재	남해군정	
32	13431	도근점	중부	244791.891	2.502	34° 47' 39.90696"	128° 03' 5.49383"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4-6	철재	남해군정	
33	13432	도근점	중부	244747.888	2.262	34° 47' 38.4542"	128° 03' 8.37823"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4-8	철재	남해군정	
34	13433	도근점	중부	244716.671	2.222	34° 47' 37.41393"	128° 03' 11.53617"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4-9	철재	남해군정	
35	13434	도근점	중부	244723.77	1.993	34° 47' 37.61189"	128° 03' 15.27729"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4-8	철재	남해군정	
36	13435	도근점	중부	244615.706	2.012	34° 47' 34.07265"	128° 03' 19.04504"	20230201	삼동면 물건리 484-8	철재	남해군정	
37	15321	도근점	중부	239698.114	159.119	34° 44' 59.9220"	127° 51' 51.2635"	20230210	남면 임포리 산34	플라스틱	남해군정	
38	15322	도근점	중부	239646.393	150.277	34° 44' 58.2603"	127° 51' 48.9154"	20230210	남면 임포리 1049-1	철재	남해군정	
39	15323	도근점	중부	239621.121	147.852	34° 44' 57.533"	127° 51' 47.5218"	20230210	남면 임포리 1078-1	철재	남해군정	
40	15324	도근점	중부	242947.930	85.06	34° 46' 44.67672"	127° 53' 28.48833"	20230213	남면 당항리 1954-2	철재	남해군정	
41	15325	도근점	중부	243021.281	91.79	34° 46' 47.05084"	127° 53' 29.32092"	20230213	남면 당항리 1070-8	철재	남해군정	
42	15326	도근점	중부	243103.377	94.16	34° 46' 49.71343"	127° 53' 29.51002"	20230213	남면 당항리 산58-8	철재	남해군정	
43	14235	도근점	중부	235643.383	2.70	34° 42' 43.15715"	128° 02' 52.50659"	20230213	미조면 미조리 94-1	맨홀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44	14236	도근점	중부	235622.900	295993.496	34° 42' 42.49423"	128° 02' 52.30393"	20230213	미조면 미조리 832	맨홀	남해군정	
45	14237	도근점	중부	235578.589	295969.440	34° 42' 41.06465"	128° 02' 51.34058"	20230213	미조면 미조리 96-14	맨홀	남해군정	
46	13454	도근점	중부	245405.762	297093.088	34° 47' 59.53071"	128° 03' 39.56667"	20230216	삼동면 룡건리 1-4	철재	남해군정	
47	13455	도근점	중부	245442.862	297054.243	34° 48' 0.74775"	128° 03' 38.05437"	20230216	삼동면 룡건리 1-4	철재	남해군정	
48	13456	도근점	중부	245485.261	296995.496	34° 48' 2.14354"	128° 03' 35.76127"	20230216	삼동면 룡건리 1-4	철재	남해군정	
49	13448	도근점	중부	248817.058	293271.603	34° 49' 51.49711"	128° 01' 10.61755"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1427	철재	남해군정	
50	13449	도근점	중부	248853.522	293346.525	34° 49' 52.65548"	128° 01' 13.58023"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1426	철재	남해군정	
51	13450	도근점	중부	248939.482	293407.649	34° 49' 55.42435"	128° 01' 16.01980"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589-1	철재	남해군정	
52	13451	도근점	중부	248956.089	293486.697	34° 49' 55.93703"	128° 01' 19.13691"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1426-1	철재	남해군정	
53	13452	도근점	중부	248977.202	293622.291	34° 49' 56.57718"	128° 01' 24.48090"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165-4	철재	남해군정	
54	13453	도근점	중부	248744.020	293601.750	34° 49' 49.01829"	128° 01' 23.57903"	20230220	삼동면 금송리 196-2	철재	남해군정	
55	14238	도근점	중부	234792.878	295925.068	34° 42' 15.58655"	128° 02' 49.2759"	20230222	미조면 미조리 184-24	철재	남해군정	
56	14239	도근점	중부	234736.337	295797.696	34° 42' 13.7950"	128° 02' 44.2486"	20230222	미조면 미조리 184-24	철재	남해군정	
57	14240	도근점	중부	236546.517	294891.456	34° 43' 12.8322"	128° 02' 9.3765"	20230222	미조면 미조리 692-3	철재	남해군정	
58	14241	도근점	중부	236385.804	295046.310	34° 43' 7.5659"	128° 02' 15.3965"	20230222	미조면 미조리 679-1	철재	남해군정	
59	14242	도근점	중부	236361.486	295141.895	34° 43' 6.7449"	128° 02' 19.1426"	20230222	미조면 미조리 151-119	철재	남해군정	
60	19573	도근점	중부	256553.600	292644.922	34° 54' 2.71859"	128° 00' 49.03752"	20230306	창선면 당항리 362-4	철재	남해군정	
61	19574	도근점	중부	256590.876	292613.667	34° 54' 3.93828"	128° 00' 47.82153"	20230306	창선면 당항리 583	철재	남해군정	
62	19575	도근점	중부	256635.344	292582.821	34° 54' 5.39116"	128° 00' 46.62445"	20230306	창선면 당항리 589-2	철재	남해군정	
63	16534	도근점	중부	249928.728	275114.429	34° 50' 32.97368"	127° 49' 16.4899"	20230307	서면 남상리 83-3	철재	남해군정	
64	16535	도근점	중부	249983.479	275130.550	34° 50' 34.74594"	127° 49' 17.14199"	20230307	서면 남상리 83-3	철재	남해군정	
65	16536	도근점	중부	250114.574	275164.433	34° 50' 38.99061"	127° 49' 18.5178"	20230307	서면 남상리 140-5	철재	남해군정	
66	13457	도근점	중부	240922.069	292826.484	34° 45' 35.48436"	128° 00' 49.96541"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95-7	철재	남해군정	
67	13458	도근점	중부	241061.711	292683.881	34° 45' 40.06182"	128° 00' 44.41432"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98-8	철재	남해군정	
68	13459	도근점	중부	241147.823	292648.155	34° 45' 42.86751"	128° 00' 43.04381"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985-1	철재	남해군정	
69	13460	도근점	중부	241254.552	292623.508	34° 45' 46.33848"	128° 00' 42.11705"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5-4	철재	남해군정	
70	13461	도근점	중부	241304.732	292675.916	34° 45' 47.94951"	128° 00' 44.19742"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997	철재	남해군정	
71	13462	도근점	중부	241360.693	292700.957	34° 45' 49.75701"	128° 00' 45.20413"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3-8	철재	남해군정	
72	13463	도근점	중부	241391.686	292738.302	34° 45' 50.75039"	128° 00' 46.68467"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3-11	철재	남해군정	
73	13464	도근점	중부	241386.929	292826.529	34° 45' 50.56719"	128° 00' 50.15161"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3-11	철재	남해군정	
74	13465	도근점	중부	241461.331	292863.390	34° 45' 52.96914"	128° 00' 51.63041"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0-21	철재	남해군정	
75	13466	도근점	중부	241545.898	292826.441	34° 45' 55.72510"	128° 00' 50.21124"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70-7	철재	남해군정	
76	13467	도근점	중부	241637.879	292826.359	34° 45' 58.70955"	128° 00' 50.24450"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718-1	철재	남해군정	
77	13468	도근점	중부	241706.891	292841.356	34° 46' 0.94379"	128° 00' 50.86155"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720-1	철재	남해군정	
78	13469	도근점	중부	241823.471	292849.249	34° 46' 4.72375"	128° 00' 51.21814"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산 462-7	철재	남해군정	
79	13470	도근점	중부	241897.066	292888.207	34° 46' 7.09887"	128° 00' 52.77915"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745-3	철재	남해군정	
80	13471	도근점	중부	241977.056	292945.957	34° 46' 9.67526"	128° 00' 55.08163"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735-8	철재	남해군정	
81	13472	도근점	중부	242091.204	292954.832	34° 46' 13.37600"	128° 00' 55.47594"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738	철재	남해군정	
82	13473	도근점	중부	242142.636	292996.948	34° 46' 15.03096"	128° 00' 57.15240"	20230309	삼동면 봉화리 1804-1	철재	남해군정	
83	11465	도근점	중부	241264.299	286998.905	34° 45' 48.43651"	127° 57' 0.97936"	20230313	이동면 신전리 1192-5	철재	남해군정	
84	11466	도근점	중부	241274.448	287076.870	34° 45' 48.74188"	127° 57' 4.04849"	20230313	이동면 신전리 1186-1	철재	남해군정	
85	11467	도근점	중부	241260.834	287156.871	34° 45' 48.27558"	127° 57' 7.18883"	20230313	이동면 신전리 1297-2	철재	남해군정	
86	19576	도근점	중부	253271.698	288444.489	34° 52' 17.58307"	127° 58' 2.36688"	20230314	창선면 광천리 산 1-2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87	19577	도근점	중부	253325.629	25.782	34° 52' 19.32691"	127° 58' 3.14440"	20230314	창선면 광천리 산 1-2	철재	남해군정	
88	19578	도근점	중부	253401.254	21.575	34° 52' 21.76354"	127° 58' 5.31890"	20230314	창선면 광천리 산 1-2	철재	남해군정	
89	19579	도근점	중부	253551.364	25.791	34° 52' 26.59951"	127° 58' 9.70252"	20230314	창선면 서대리 산 232-2	철재	남해군정	
90	19580	도근점	중부	253634.184	26.684	34° 52' 29.26603"	127° 58' 12.32250"	20230314	창선면 서대리 산 229-2	철재	남해군정	
91	19581	도근점	중부	253693.814	18.568	34° 52' 31.17368"	127° 58' 15.73748"	20230314	창선면 서대리 산 231-1	철재	남해군정	
92	19582	도근점	중부	253791.641	13.482	34° 52' 34.31771"	127° 58' 19.53383"	20230314	창선면 서대리 1148-5	철재	남해군정	
93	19583	도근점	중부	253885.884	8.356	34° 52' 37.35613"	127° 58' 21.99054"	20230314	창선면 서대리 1075-2	철재	남해군정	
94	19584	도근점	중부	255238.497	195.181	34° 53' 20.49801"	127° 59' 54.34092"	20230314	창선면 용도리 산 131-3	철재	남해군정	
95	19585	도근점	중부	255259.802	192.273	34° 53' 21.18469"	127° 59' 54.90451"	20230314	창선면 용도리 산 131-3	철재	남해군정	
96	19586	도근점	중부	255295.287	187.774	34° 53' 22.33259"	127° 59' 55.33636"	20230314	창선면 용도리 산 131-3	철재	남해군정	
97	14243	도근점	중부	236079.230	14.77	34° 42' 57.48772"	128° 02' 30.63508"	20230315	미조면 미조리 562	철재	남해군정	
98	14244	도근점	중부	236087.705	21.19	34° 42' 57.78181"	128° 02' 28.4057"	20230315	미조면 미조리 562	철재	남해군정	
99	13474	도근점	중부	248164.588	18.234	34° 49' 29.37503"	128° 03' 2.28465"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324-2	철재	남해군정	
100	13475	도근점	중부	248067.121	29.902	34° 49' 26.19455"	128° 03' 4.34287"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186-1	철재	남해군정	
101	13476	도근점	중부	247991.717	35.602	34° 49' 23.72831"	128° 03' 6.59596"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318-1	철재	남해군정	
102	13477	도근점	중부	247953.588	38.502	34° 49' 22.47045"	128° 03' 8.98001"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311	철재	남해군정	
103	13478	도근점	중부	247925.023	40.512	34° 49' 21.52062"	128° 03' 11.62826"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철재	남해군정	
104	13479	도근점	중부	247887.853	39.642	34° 49' 20.30065"	128° 03' 13.22660"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철재	남해군정	
105	13480	도근점	중부	247828.757	37.371	34° 49' 18.37133"	128° 03' 14.58198"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철재	남해군정	
106	13481	도근점	중부	247784.733	32.391	34° 49' 16.92451"	128° 03' 16.69078"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196-7	철재	남해군정	
107	13482	도근점	중부	247677.912	24.959	34° 49' 13.44375"	128° 03' 18.36934"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279-1	철재	남해군정	
108	13483	도근점	중부	247689.119	24.623	34° 49' 13.78181"	128° 03' 21.31757"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295-3	철재	남해군정	
109	13484	도근점	중부	247764.591	34.466	34° 49' 16.19463"	128° 03' 25.48250"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307-10	철재	남해군정	
110	13485	도근점	중부	247756.581	35.937	34° 49' 15.91364"	128° 03' 27.90963"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307-7	철재	남해군정	
111	13486	도근점	중부	247754.799	34.717	34° 49' 15.83855"	128° 03' 29.89258"	20230316	삼동면 동천리 산 307-7	철재	남해군정	
112	13487	도근점	중부	246687.708	3.301	34° 48' 44.08471"	127° 57' 43.98994"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62	철재	남해군정	
113	13488	도근점	중부	246757.438	3.312	34° 48' 46.38562"	127° 57' 39.15039"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59	철재	남해군정	
114	13489	도근점	중부	246760.354	3.021	34° 48' 46.52359"	127° 57' 33.65648"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57	철재	남해군정	
115	13490	도근점	중부	246824.611	3.282	34° 48' 48.63554"	127° 57' 30.25099"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57	철재	남해군정	
116	13491	도근점	중부	246875.519	3.074	34° 48' 50.24947"	127° 57' 35.06815"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54	철재	남해군정	
117	13492	도근점	중부	246896.816	3.185	34° 48' 50.92065"	127° 57' 37.58883"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53-1	철재	남해군정	
118	13493	도근점	중부	246985.088	3.488	34° 48' 53.73961"	127° 57' 43.33531"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산461-1	철재	남해군정	
119	13494	도근점	중부	247007.339	3.280	34° 48' 54.40531"	127° 57' 50.45141"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918	철재	남해군정	
120	13495	도근점	중부	247056.771	3.062	34° 48' 55.97678"	127° 57' 54.56011"	20230316	삼동면 영지리 2795	철재	남해군정	

남해군 고시 제2023-35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남해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의견 수렴
- 2. 예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남해군청 (namhae.go.kr))게재
- 3. 예고기간 : 2023. 3. 20. ~ 2023. 4. 9. (20일간)
-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붙임참조)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지정일자(지정번호)	사 유
해 제	우정어린이집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가길 9	2014. 07.	폐원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60-3708)

다. 제출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12 건설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6)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설 및 위치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344호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빈집, 65세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 신혼부부,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주택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남해군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의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 등), 신혼부부,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귀농·귀촌인,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4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4년 *
- * (지원금액) 750만원 이하 : 2년
- 750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00만원)×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 신청서식
 -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건축과 부서소식란,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 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 (시·군) → 임차인 모집 → 시·군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시·군 입회하에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
 - ※ 청년 정책네트워크, 공동체협력지원가, 작은학교 담당부서를 활용한 모집 가능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의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월할 계산하여)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시·군	연락처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 - 3489

남해군 공고 제2023-349호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신청 기간 : 2023. 3. 13.(월) 09:00 ~ 4. 12.(수) 18:00까지
2. 사업 대상 : 남해군 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0여개
 - (우선지원)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 (지원제외)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기 지원 사업체
 - ※ 신청 사업장 미달 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가능
3. 컨설팅 지원 내용
 -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 :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위험성 평가 포함)
 -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지원

4. **컨설팅 지원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및 공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한 컨설팅(2인1조, 1일1개소 컨설팅, 사업체당 최대 4회 지원)

5. **지원 방법**

가. 신청 기간 : 2023. 3. 13.(월) ~ 4. 12.(수) 18:00까지

나.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oveae2000@korea.kr), 팩스(860-3727)로 제출

다.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6. **사업장 선정** :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산재발생 위험도 높은 사업장 우선순위 기준

7. **선정 통보** : 4. 13.(목) ~ 4. 19.(수)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연락

※문의사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860-3622~3625)

남해군 공고 제2023-371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 1.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4.(14일간)
- 2.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 3. 폐기처리대상 : 뗏목 1대(붙임내역 참조)
- 4. 폐기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이후
-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은 남해군 해양발전과 어항관리팀(055-860-3374)로 연락바랍니다.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적량항 인근 공유수면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표류뗏목)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12m*3m/상부목재, 하부 흰색스티로폼
관 리 청	남해군청		관 리 번 호	제2023-1호
제거 예정일자	공고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 보증금	해 당 없 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3월 24일(금)까지 남해군청 어항관리팀(055-860-337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발전과 김은진 055-860-3374)

방치선박 제거 공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30번지 14지선 공유수면				
선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원	선적항		미상		톤수		FRP선/ 약 1톤추정		
관리청			남해군청			관리번호		제2022-2호	
제거 예정일자			공고종료 이후						
제거 방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 없음						
입찰 보증금			해당 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남해군청 해양보전담당(055-860-337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수산과 이현정 055-860-3379)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30번지 14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 약 톤추정				
관 리 청		남해군청			관 리 번 호		제2022-3호		
제거 예정일자		공고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 보증금		해 당 없 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남해군청 해양보전담당(055-860-337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수산과 이현정 055-860-3379)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30번지 14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 약 톤추정
관 리 청	남해군청		관 리 번 호	제2022-4호
제거 예정일자	공고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 보증금	해 당 없 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남해군청 해양보전담당(055-860-337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수산과 이현정 055-860-3379)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17번지 4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 약 톤추정	
관 리 청			남해군청			관 리 번 호		제2022-5호	
제거 예정일자			공고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 보증금			해 당 없 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2월 3일(화)까지 남해군청 해양보전담당(055-860-337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수산과 이현정 055-860-3379)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1496-2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 약 톤추정		
관 리 청			남해군청			관 리 번 호		제2022-6호	
제 거 예 정 일 자			공고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 보증금			해 당 없 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남해군청 해양보전담당(055-860-3379)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담당자 : 해양수산과 이현정 055-860-3379)

남해군 공고 제2023-374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3.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관리지역	소계	92,359	100.0	
	계획관리지역	59,870	64.8	
	보전관리지역	32,489	35.2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이동면 신전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신전숲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일원	92,359	-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4.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359		92,359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51,020		51,020	55.2	
숙박단지	10,680		10,680	11.6	
펜션	1,595		1,595	1.7	
수영장	923		923	1.0	
병영막사 체험장	1,860	감)1,860	-	-	
연꽃 테마원	7,218		7,218	7.8	
만남의 광장	300		300	0.3	
휴게쉼터 및 산책로	825		825	0.9	
분수광장	500		500	0.5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1,300		1,300	1.4	
어린이놀이터	705	감)705	-	-	
어울림광장	2,099	감)691	1,408	1.5	
오토캠핑장	2,731		2,731	3.0	
청소년야영장	20,284		20,284	22.0	
IT 코워킹 플랫폼	-	증)3,256	3,256	3.5	
공공시설용지	12,977		12,977	14.1	
주민활성화센터	1,100		1,100	1.2	
오수처리장	240		240	0.3	
발전시설	971		971	1.0	
주차장	3,769		3,769	4.1	
안내소	240		240	0.3	
도로	6,657		6,657	7.2	
녹지용지	28,362		28,362	30.7	

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4.2.1.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4	812	6,657	-	-	-	-	-	-	4	812	6,657
소로	4	812	6,657	-	-	-	-	-	-	4	812	6,657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5	국지 도로	472	신전리 862-4	화계리 7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2	7.5	국지 도로	90	신전리 728	신전리 743-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3	7.5	국지 도로	103	화계리 82-4	화계리 79-4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보1	5~7	특수 도로	147	소로 3-1호선	신전리 743-6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9-133호 (2019.10.24.)	

4.2.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신전리 733	1,029	-	1,02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01.16.)	
기정	2	주차장2	신전리 733	2,740	-	2,7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2.3.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태양광 설비	신전리 733-1	971	-	971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2.4.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수 처리장	신전리 733	40	-	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2	오수 처리장	신전리 798-11	200	-	20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3.1.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51,020	-	51,020	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00	-	500	분수광장
				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2,099	감)691	1,408	여울림광장
				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705	감)705	-	어린이놀이터
				I-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825	-	825	휴게쉼터 및 산책로
				I-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300	-	300	만남의 광장
				I-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1,595	-	1,595	펜션
				I-7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860	감)1,860	-	병영막사 체험장
				I-8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923	-	923	수영장
				I-9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300	-	1,300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I-10	이동면 신전리 748-1번지 일원	7,218	-	7,218	연꽃테마원
				I-11	이동면 신전리 798-3번지 일원	10,680	-	10,680	숙박단지
				I-12	이동면 화계리 79-5번지 일원	2,731	-	2,731	오토캠핑장
				I-13	이동면 신전리 743-3번지 일원	11,451	-	11,451	청소년야영장
				I-14	이동면 신전리 743-1번지 일원	8,833	-	8,833	청소년야영장
				I-15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	증)3,256	3,256	IT 코워킹 플랫폼

4.3.2.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2,977	-	12,977	I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6,657	-	6,657	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I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3,769	-	3,769	주차장
				I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100	-	1,100	주민활성화 센터
				II-4	이동면 신전리 733-4번지 일원	240	-	240	안내소
				II-5	이동면 신전리 798-11번지 일원	240	-	240	오수처리장
				II-6	이동면 신전리 733-1번지 일원	971	-	971	발전시설

4.3.3. 녹지용지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28,362	-	28,362	III-1	이동면 신전리 752-2번지 일원	28,362	-	28,362	녹지

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4.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 I-5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6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3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8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9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0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1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 목 그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2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3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4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5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4.4.2.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2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I-4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6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5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6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4.3. 녹지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녹지용지	용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 녹지
			불허용도	• 건축불허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해군 공고 제2023-38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나.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L=342m, B=10.8m
- 라. 시 행 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3. 14.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3.14. ~ 2023.3.29.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
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
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
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39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가. 우리 군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제4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을 “(국내 여비 지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 를 “여비는 영 별표 2” 로 한다.
나. 별표 2 삭제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행정과 후생팀)

-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우52425)
- 2) 전 화 : 055-860-3124, 팩스 : 055-860-3737
- 3) 전자우편(이메일) : kiseobi@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후생팀 (전화 055-860-3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국내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를 “여비는 영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 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